

## 12.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施行令 및 施行規則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3-98號 1993. 6. 11

### 1. 개정안의 주요내용<시행령개정안 주요골자>

가. 현재 개발부담금은 3,300제곱미터이상(도시계획구역은 1,650제곱미터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대도시는 660제곱미터이상, 6대도시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은 990제곱미터이상, 비도시계획구역은 1,650제곱미터이상으로 부과대상기준면적을 조정함.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후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의 종류를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등 43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등의 변경으로 함.

다. 용도지역변경후 개발하는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개발

사업시행전에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 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취득시부터 용도지역변경까지 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개시시점을 용도지역변경을 기준으로 2년전으로 함.

라.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지가는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되, 납무의무자가 사업완료후 25일이내에 국가등으로부터 승인받은 처분가격을 신고하면 그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업을 주택·공장등 13종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정함.

### <시행규칙개정안 주요골자>

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가격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공공기관을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세감면기관등으로 정함.

- 나. 농지전용부담금등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종류를 정함.
- 다. 콘도미니엄건설사업등 감정평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정함.
- 라.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을 받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추

가함.

##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6월 30일까지 그 의견을 건설부장관(참조 : 토지국장, 전화 번호 500-29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